

"균형, 혁신, 기회로 희망 화성을 만들어 갑니다."



화 성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 배부

1.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-1546(2022.9.5.), 경기도 노동정책과-10918(2022.9.7.), 화성시 일자리정책과-16785 (2022.09.1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규정에 따라 2022. 8. 18.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를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휴게시설 설치제도 관련 문의

-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(☎044-202-8896, ☎1350)
-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(☎1577-4200, ☎031-5189-2647)

붙임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. 끝.

화 성 시 장 인

수신자 화성상공회의소, 관내 기업체 대표 귀하, 관내 기업인협의회 귀하



주무관 김유라 기업정책팀장 남원주 기업지원과장 전결 2022. 9. 15. 조한용

협조자

시행 기업지원과-11119 (2022. 9. 15.) 접수

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60번길 12 / http://www.hscity.go.kr

전화번호 031-5189-2276 팩스번호 031-5189-1697 / dbfk020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당신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.